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시행일 :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기금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②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③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④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⑤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① 기금은 기금의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 및 다음 각 호의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다.

1. 투자대상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2.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중점관리사안 등

②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비공개대화 및 다음 각 호의 주주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3.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4. 소송 제기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주활동은 제2항 각호를 통해 이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의결권행사의 경우 기금의 보유지분율과 보유비중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1.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2.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

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3.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이 경우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수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안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4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⑥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편 책임투자

제6조(대상) ① 기금은 투자대상 주식 및 채권에 대해 투자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무성과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고, 변경내용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고려 방식)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는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편 주주권 행사

제1장 의결권 행사

제9조(의결권 행사 대상)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의결권 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

-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권(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안건별 세부기준) 주주총회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주식의 경우 별표 1, 해외주식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임장 제공) 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기금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3조(중점관리사안) 중점관리사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6.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공개대화) ① 기금은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50 이상 또는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10 이상인 기업 중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비공개대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비공개대화는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비공개서한(질의서, 의견서) 발송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별표 1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연계할 수 있다.

제15조(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① 기금은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약 1년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은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할 수 있다.
③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① 기금은 제15조에 따른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은 전문위원회에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개서한) ①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하여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주주제안 등) ①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공개중점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공개중점관리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등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호 및 제2호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등을 우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공개중점관리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등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으로 즉시 주주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9조(대상)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는 본 장에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비공개 대화 기업 대상 관련 지분율, 보유비중 등 요건 및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송 제기

제21조(주주 대표소송의 제기) ①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기업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의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제소의 결정) ① 기금은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대비 비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주 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기업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
 2.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여부
 3.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제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하여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소송 의뢰)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22조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한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단 주관부서에 소송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기금은 기금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2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 준용한다.

제2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소송 제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및 공단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4편 공시 및 제출 등

제27조(통보 및 공개) 전문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즉시 기금운용본부에 통보하고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시 및 제출) ① 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2.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다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경우 세부 반대 사유는 공시 제외
3. 공개중점관리기업명, 공개서한 등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발생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4. 소송 대상, 소송 내용, 소송 제기 이유 등 소송 제기 내역
5. 기타 전문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사항
6. 상기 각호와 관련된 통계 내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결정이 있은 때(제1항제2호의 경우는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통계 내역은 연간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
 2. 전문위원회가 사전공개 하기로 결정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방향
-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는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금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 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9조(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① 기금운용본부는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내역 관련 통계 등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연간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기금운용본부는 작성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0조(내부통제) 기금운용본부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이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31조(기록보관)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역량강화)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침 검토주기) 전문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7.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를 제외한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26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9. 3. 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를 제외한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26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7)

(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 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1.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p>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p> <p>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p> <p>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p>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p>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p> <p>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p> <p>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p>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6.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8.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20. 이사회 내 위원회
<p>①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반대한다.</p> <p>②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p>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2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 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3. 이사 및 경영진 보상

-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 한다.
-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혐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4. 주식 연계 보상

-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5.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6.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7. 중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8.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 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9.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0.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리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지침 제3편 제2장 및 제3장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3.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4.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5.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30. 이사의 선임 및 31.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세부기준 31.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3. 이사보수한도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③ 지침 제13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34. 감사보수한도 승인

33.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5.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①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¹⁾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지침 제13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7.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38.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39.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VII. 자본의 감소

40.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1)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

VIII. 기타

41.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2.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 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3.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5. 비금융주력자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시,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별표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송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연계된 안건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1.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6.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8.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위원회

19.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0.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21. 위원회 구성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구성시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제안을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2. 이사 및 경영진 보상

-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3. 주식 연계 보상

-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4.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5.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6.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7.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 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8.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9. 이사의 선임

-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향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30.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

다음의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8.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9.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10. 그 밖에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1.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제30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자
2.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자
3.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과도하게 장기인 자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9. 이사의 선임 및 31.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33.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외부감사인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보수 책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 다음의 사유가 없는 경우 찬성한다.

1. 회계장부나 감사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충분한 설명 없이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3. 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유사기업 평균에 비해 크게 높거나 비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전체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경우

② 외부감사인의 임원이 해당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에 반대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4. 주요임원 보상에 대한 권고안건

주요임원에 대한 보상을 주주총회의 권고안건으로 하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보상에 대한 공시수준, 보상의 성과와의 연계성,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5. 이사(임원)보수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36. 감사보수한도 승인

35. 이사(임원)보수 승인을 준용한다.

37.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9. 합병 및 인수

-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
-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40. 영업양수도 등

-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41.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VII. 자본의 감소

42.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VIII. 기타

43.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4.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5.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6.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일 전에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7. 관계자 거래

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은 사안별로 판단하여 이해관계의 정도, 거래의 공정성 및 적정성,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재무전문가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반대한다.

[별표 3]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양식

회사명	OOO	주주총회 일자	0000.00.00.	정기/임시
의안번호	의안내용	행사내용	반대 또는 기권시 사유 <u>(위탁운용사</u> <u>의결권행사는</u> <u>제외)</u>	근거조항

[별표 4] 중점관리사안 선정 기준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2.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보수금액, 기업의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① 당해 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행위 ②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 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경영진의 사익편취)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안건의 경우
5. 정기 ESG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정기 ESG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